주식회사 푸드머스
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4 로즈데일빌딩 3,8층
TEL : 02-2140-2800(代) / FAX : 02-6499-0241

문 번 : FM-SL-18-1120호
수 신 : 학교관계자 귀하
일 자 : 2018년 11월 20일
발 신 : ㈜푸드머스
제 목 : ㈜푸드머스 2차 피해보상(위로금) 안내

1. 귀교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.

2. 이번 식중독 사고로 인한 피해 학생, 학부모, 교직원분들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
3. 금번 사고로 인한 피해자분들께는 1차로 치료비(실비) 보상을 완료했으며 추가로 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과 절차로 진행하고자 합니다.

가. 위로금 기준

구분	약국/자가	통원	입원				
			1-3일	4-6일	7-9일	10~13일	14일 이상
금액	10만원	20만원	20만원	40만원	60만원	80만원	100만원

※ 산정 기준 : 기존 법원 판례 및 보험사 사례를 참고하여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위로금 기준과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기준을 확인하였으며 폐사에서는 이를 상향 조정하여 책정

나. 지급 절차 : 1차 치료비가 지급된 은행 계좌로 금주 내 입금

다. 안내방법 : 피해자확인서에 기재된 휴대폰 연락처로 안내문자 발송 후 입금

4. 궁금하신 사항은 ㈜푸드머스 피해상담센터(080-600-2800)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2018년 11월 20일

㈜푸드머스 대표이사 유상석